

의 안 번 호	제 313 호
의 결 연 월 일	. . . (제 회)

충청북도 토종농작물 보존 및 육성 조례안

발 의 자	김국기 의원 등 8인
발의연월일	2023년 5월 31일

충청북도 토종농작물 보존 및 육성 조례안

(김국기 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313
----------	-----

발의연월일 : 2023년 5월 31일

발 의 자 : 김국기, 박경숙, 김꽃임, 이양섭,
이의영, 이종갑, 임병운, 최정훈

1. 제안이유

- 충청북도에서 자생하거나 재배되는 토종농작물을 보존·육성하여 충청북도 농업의 지속가능한 성장과 건강하고 다양한 먹거리 생산에 이바지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토종농작물의 품종 보존·육성에 관한 도지사의 책무(안 제3조)
- 토종농작물 보존·육성을 위한 계획 수립(안 제4조)
- 토종농작물 보존·육성협의회 설치·운영 등(안 제5조 ~ 안 제6조)
- 토종농작물 사업지원(안 제7조)

3. 조례안 : 붙임

4. 참고사항

- 관계 법령 : 붙임
- 조례안예고 : 2023. 6.
- 협의 : 충청북도 농정국 스마트농산과
- 비용추계 : 붙임

충청북도 토종농작물 보존 및 육성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충청북도에서 자생하거나 재배하는 토종농작물을 보존 및 육성함으로써 충청북도 농업의 지속가능한 성장과 건강한 먹거리 생산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토종농작물”이란 「농업생명자원의 보존·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가목 및 나목의 야생종과 재래종으로서 충청북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가 지정한 것을 말한다.
2. “농업”이란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제1호에 따른 산업을 말한다.
3. “농업인등”이란 법 제3조제2호에 따른 농업인과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6조에 따른 영농조합법인 및 같은 법 제19조에 따른 농업회사법인을 말한다.

제3조(책무) ① 도지사는 토종농작물의 품종 보존 및 육성에 관한 제반 정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 ② 도지사는 농업인등이 토종농작물을 보존 및 육성에 스스로 참여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토종농작물 보존 및 육성계획 수립) ① 도지사는 토종농작물의 품종 보존과 육성 등을 위하여 충청북도 토종농작물 보존 및 육성계획(이하 “육성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육성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토종농작물의 실태조사, 관리 및 재배현황 등에 관한 사항
2. 토종농작물 종자의 생산·보급, 재배기술의 연구·지도와 인력양성에 관한 사항
3. 토종농작물의 판매·소비촉진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토종농작물의 보존 및 육성과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③ 도지사는 육성계획을 수립·시행하기 위하여 토종농작물 관련 기관 또는 관계 전문가를 참여시킬 수 있다.

제5조(토종농작물 민·관정책협의회 설치 및 기능) ① 도지사는 토종농작물의 보존·육성 및 생산 등의 심의·자문을 위하여 충청북도 토종농작물 민·관정책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② 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거나 자문에 응한다.

1. 토종농작물 관련 주요 정책 및 사업지원에 관한 사항
2. 육성계획 수립 및 변경에 관한 사항
3. 토종농작물의 종자 지정 및 생산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도지사가 토종농작물의 보존·육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6조(협의회 구성 및 운영) ① 협의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협의회는 당연직 위원과 위촉직 위원으로 구분하되, 당연직 위원은 농정국장, 농업기술원 연구개발국장, 농산사업소장이 되고,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도지사가 위촉한다.

1. 충청북도의회에서 추천하는 사람
2. 토종농작물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
3. 토종농작물 관련 농업인 대표
4. 그 밖에 토종농작물 보존 및 육성 정책에 관하여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람

③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④ 협의회는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고, 간사는 토종농작물 담당업무 과장이 된다.

⑤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⑥ 그 밖에 협의회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도지사가 따로 정한다.

제7조(사업지원) ① 도지사는 토종농작물의 보존 및 육성을 위하여 충청북도가 추진하는 각종 시책사업과 연계하여 필요한 사업을 우선하여 지원할 수 있다.

- ② 도지사는 토종농작물을 생산하는 농업인등에 대하여 생산 및 채종에 필요한 시설 장비 등을 지원할 수 있다.
- ③ 도지사는 토종농작물의 소비활성화를 위하여 농작물 직거래장터 판매장 개설 및 공공기관·각급 학교 등에 소비촉진 및 홍보 등을 지원할 수 있다.
- ④ 토종농작물 유전자 분석 및 시료 보관을 위하여 종자은행 시설 구축 등 토종농작물의 보존과 육성에 필요한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
-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사업지원에 필요한 절차·방법·기준 등 구체적인 사항은 도지사가 따로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관련법령 발췌

□ 농업생명자원의 보존·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 4. (생략)

5. “농업유전자원”이란 농업생물자원이 포함하고 있는 것으로서 실제적이거나 잠재적인 가치를 지닌 유전물질을 말한다. 이 중에서 종자·영양체(營養體)·화분(花粉)·세포주·유전자·잠종(蠶種)·종축(種畜)·난자(卵子)·수정란(受精卵)·포자(孢子)·정액(精液)·세균(細菌)·진균(真菌) 및 바이러스 등은 다음 각 목에 따라 구분한다.

가. 야생종: 산·들 또는 강(하천·댐·호소·저수지를 포함한다)이나 바다 등 자연 상태에서 서식하거나 자생하는 종

나. 재래종: 한 지역 및 수역(이하 “지역”이라 한다)에서 재배·사육·양식되어 다른 지역의 품종과 교배되지 아니하고 그 지역의 기후·풍토 및 수중환경에 적응된 종

다. 육성종: 인간의 필요를 충족시키기 위하여 진화과정에서 인위적인 영향을 받은 종

라. 도입종: 우리나라의 야생종, 재래종 및 육성종에 속하지 아니하는 종으로서 외국으로부터 도입된 종

6. ~ 8. (생략)

제3조(국가 등의 책무)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농업생명자원의 다양성 확보와 지속가능한 이용을 위하여 농업생명자원의 보존·관리 및 이용에 필요한 시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농업생명자원의 다양성 확보와 지속가능한 이용과 국제규범의 이행을 위하여 농업생명자원의 취득 및 이로부터 발생한 이익의 공유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③ 국민은 농업생명자원의 보존·관리 및 이용에 관하여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수립·시행하는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

□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농업”이란 농작물재배업, 축산업, 임업 및 이들과 관련된 산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2. “농업인”이란 농업을 경영하거나 이에 종사하는 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3. “농업경영체”란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농업경영체를 말한다.
4. “생산자단체”란 농업 생산력의 증진과 농업인의 권익보호를 위한 농업인의 자주적인 조직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단체를 말한다.
5. ~ 9. (생략)

제4조(국가·지방자치단체 및 농업인·소비자 등의 책임)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농업과 농촌의 지속가능한 발전과 공익적 기능을 증진하고, 안전한 농산물과 품질 좋은 식품을 안정적으로 공급하며, 농업 인력 육성, 농업인과 농촌주민의 소득안정,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종합적인 정책을 세우고 시행하여야 한다.

② ~ ⑤ (생략)

□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6조(영농조합법인 및 영어조합법인의 설립신고 등) ① 협업적 농업 경영을 통하여 생산성을 높이고 농산물의 출하·유통·가공·수출 및 농어촌 관광휴양사업 등을 공동으로 하려는 농업인 또는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4호에 따른 농업 관련 생산자단체(이하 “농업생산자단체”라 한다)는 5인 이상을 조합원으로 하여 영농조합법인(營農組合法人)을 설립할 수 있다.

② ~ ⑧ (생략)

제19조(농업회사법인 및 어업회사법인의 설립신고 등) ① 농업의 경영이나 농산물의 유통·가공·판매를 기업적으로 하려는 자나 농업인의 농작업을 대행하거나 농어촌 관광휴양사업을 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농업회사법인(農業會社法人)을 설립할 수 있다.

② ~ ⑪ (생략)

충청북도 토종농작물 보존 및 육성 조례안 비용추계서

1. 사업개요

- 충청북도에서 자생하거나 재배되는 토종농작물 보존·육성
- 농업의 지속 가능한 성장과 건강하고 다양한 먹거리 생산 도모

2. 비용 발생 요인

- 토종농작물의 보존 및 육성을 위한 사업지원

3. 관련조문

- 조례안 제6조(협의회 구성 및 운영)
- 조례안 제7조(사업지원)
 - ② 도지사는 토종농작물을 생산하는 농업인 등에 대하여 생산 및 채종에 필요한 시설 장비 등을 지원할 수 있다.
 - ③ 토종농작물의 소비활성화를 위하여 농작물 직거래장터 판매장 개설 및 공공기관·각급 학교 등에 소비촉진 및 홍보 등을 지원할 수 있다.
 - ④ 토종농작물 유전자 분석 및 시료 보관을 위하여 종자은행 시설 구축 등 토종농작물의 보존과 육성에 필요한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

4. 비용추계 결과

가. 추계의 전제

- 추계기간은 2024년부터 2028년 5년간으로 함
- 추계기간(5년간) 이후에도 지속적으로 비용이 발생 할 것으로 예상

- 물가상승, 인건비 상승 등은 별도 반영하지 아니함
- 조례안 제7조제2항~제4항에 의거 토종농산물 생산 농업인등에 대한 생산 및 채종 시설·장비, 판매장·홍보 지원, 종자은행 시설 구축에 대한 비용 추계

나. 추계 결과 : 255,114천원

- 협의회 구성 및 운영 : 1,400천원
 - 협의회 운영수당 : 100천원 × 7명 × 2회 = 1,400천원
- 토종종자 생산·채종 기반조성 : 80,400천원
 - 농가별 영농자재 지원 : 2,600천원×24ha = 62,400천원
 - ※ 도내 토종종자 재배면적('22. 11. 기준) : 24ha
 - 기반조성 및 농기계 등 지원 : 18,000천원×1개소 = 18,000천원
- 토종농산물 소비활성화 지원(판매장, 홍보 지원) : 10,000천원
 - 직거래 장터(판매장) 운영 및 홍보비 : 5,000천원×2개소 = 10,000천원
- 토종농작물 종자은행 시설 구축 : 163,314천원
 - 저온저장고(100m³) : 130,000천원×1개소 = 130,000천원
 - 냉동보관시설 : 33,314천원×1식 = 33,314천원

다. 재원조달방안 : 도비, 시군비, 자부담(도 15%, 시군 35%, 자담 50%)

5. 연도별 비용추계서 : 붙임

〈 연도별 비용 추계표 〉

(단위 : 천원)

구 분		1차년도 (2024년)	2차년도 (2025년)	3차년도 (2026년)	4차년도 (2027년)	5차년도 (2028년)	계
세 출		255,114	91,800	91,800	91,800	91,800	622,314
협의회 운영 수당		1,400	1,400	1,400	1,400	1,400	7,000
토종종자 생산채종 기반조성 지원		80,400	80,400	80,400	80,400	80,400	402,000
토종농산물 활성화 지원		10,000	10,000	10,000	10,000	10,000	50,000
토종종자은행 시설 구축		163,314	-	-	-	-	163,314
재원 조달		255,114	91,800	91,800	91,800	91,800	622,314
의존 재원	소 계	-	-	-	-	-	-
	보조금	-	-	-	-	-	-
	지방교부세	-	-	-	-	-	-
자체 수입	소 계	255,114	91,800	91,800	91,800	91,800	622,314
	지방세	255,114	91,800	91,800	91,800	91,800	622,314
	세외수입	-	-	-	-	-	-
지방채		-	-	-	-	-	-
기 금		-	-	-	-	-	-
구·군비		-	-	-	-	-	-
기 타 (차입금, 민자, 예비비 등)		-	-	-	-	-	-